

## 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 
따라서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, 미 납부 또는 수입 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%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※ 수입인지 분실 시 재 발급이 불가능 하므로, 계약 시 수입인지를 지참해주세요. (수입인지 미 발급 시 계약 불가능)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

| 과세대상      | 납부기한     | 기재금액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부동산 분양계약서 | 계약체결일    | 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       |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|
| 분양권 전매계약서 | 명의변경 승인일 | 실제 거래가격(분양대금+프리미엄) |                 |

## ■ 세액

| 기재금액            | 세액  | 기재금액           | 세액  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| 2만원 |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5만원 |
|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| 4만원 | 10억원 초과        | 35만원 |
|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| 7만원 | -              | -    |

## ■ 인지세 가산세 (※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"21.1.1부터 적용)

| 구 분      | 내 용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법정납부기한 후 | 3개월 이내 | 미납세액의 100% 가산세로 부과 |
|          | 6개월 이내 | 미납세액의 200% 가산세로 부과 |
|          | 6개월 초과 | 미납세액의 300% 가산세로 부과 |

※ 법정 납부기한 =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

## 온라인 이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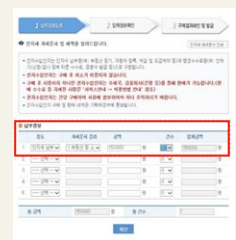
1.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www.edoc-revenuestamp.or.kr)  
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,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3. 구매 (납부정보 입력)

| 구분   | 내용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
| 용도   | 인지세납부        |
| 과세문서 |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|
| 금액   | 150,000원     |
| 건수   | 1건           |



4. 출력

-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(인지세) 홈페이지 이용방법 : 금융결제원 문의 (1577-5500)

※ 소인 : '소인'은 해당 수입인지가 사용 완료되었음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. '소인된 전자수입인지는' 재사용 또는 환매가 불가능하오니 착오로 '소인'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오프라인 이용방법

1. 우체국, 은행 방문(방문전 문의요망)

2.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
3. 전자수입인지 발급